

##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- 283호

「건설인·허가업무 전자처리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579호)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5월 23일  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건설인·허가업무 전자처리」 일부개정(안)

#### 1. 개정이유

건설기술관리법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건설기술관리법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

#### 3. 기타 참고사항

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의 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(전화 : 044-201-3558,355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「건설인·허가업무 전자처리」 일부개정(안)

「건설인·허가 업무 전자처리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1의 ㉔ 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신청”을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신청”으로 한다. 1의 ㉕ 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”를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등록 신청”으로 한다. 1의 ㉖ 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신청”을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재발급신청”으로 한다. 1의 ㉗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”은 삭제. 1의 ㉘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신청”은 삭제. 1의 ㉙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감리전문회사 휴업(폐업)신고”를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휴업·폐업 신고”로 한다. 1의 ㉚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감리전문회사 양도·양수 신고”를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양도·양수 신고”로 한다. 1의 ㉛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신고”를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법인합병신고”로 한다. 1의 ㉜ 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”은 삭제.
- 1의 ㉝ 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”를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 1의 ㉞ “건설기술관리법

시행규칙 제24조제3항”을 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”  
으로 하고, “국토해양부훈령”을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

6의 “이 고시는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”를 “고시한 날부터  
시행한다”로 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「건설인·허가 업무 전자처리」 일부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1.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① ~ ③⑤ (생략)	1.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① ~ ③⑤ (현행과 같음)
③⑥ 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신청</u>	③⑥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신청</u>
③⑦ 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 변경신고</u>	③⑦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 등록 신청</u>
③⑧ 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신청</u>	③⑧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</u>
③⑨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</u>	③⑨ <삭 제>
④①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</u>	④① <삭 제>
④①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감리전문회사 휴업(폐업) 신고</u>	④①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휴업·폐업 신고</u>
④②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의 감리전문회사 양도·양수 신고</u>	④②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양도·양수 신고</u>
④③ <u>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 제2호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</u>	④③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법인합병 신고</u>
④④ 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</u>	④④ <삭 제>
④⑤ (생략)	④⑤ (현행과 같음)

<p>④⑥ 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</u></p> <p>④⑦ <u>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해양부훈령) 제5조제4항의 기술용역 이행 실적증명</u></p> <p>2~5 (생략)</p> <p>6. 시행시기 : <u>이 고시는 201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</u></p> <p>7. (생략)</p>	<p>④⑥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</u></p> <p>④⑦ <u>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훈령) 제5조제4항의 기술용역 이행 실적증명</u></p> <p>2~5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시행시기 : <u>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# 「건설인·허가업무 전자처리」 일부개정(안) 전문

## 1.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

- ① 도로법 제4조의 권리·의무의 승계신고
- ② 도로법 제29조·제31조·제33조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
- ③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41조의 공사준공 통지
- ④ 도로법 제34조의 공사시행 허가신청
- ⑤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도로공사 착수신고
- ⑥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
- ⑦ 도로법 제34조의 도로유지 허가신청
- ⑧ 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 허가신청
- ⑨ 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
- ⑩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
- ⑪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의 도로점용공사(원상회복공사) 완료확인 신청
- ⑫ 도로법 제46조제2항의 토지사용(출입)통지
- ⑬ 도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공사착공 보고
- ⑭ 도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
- ⑮ 도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보조금사업 실적보고
- ⑯ 도로법 제88조의 노선의 인정(폐지·변경) 승인신청
- ⑰ 도로법 제38조,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
- ⑱ 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
- ⑲ 도로법 제38조,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
- ⑳ 도로법 제38조, 제64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
- ㉑ 유료도로법 제6조의 유료도로신설(개축)허가신청
- ㉒ 하천법 제5조제2항의 권리·의무승계 신고
- ㉓ 하천법 제30조의 하천공사허가 신청
- ㉔ 하천법 제30조의 하천유지·보수공사허가 신청
- ㉕ 하천법 제30조제5항의 실시계획인가(변경인가) 신청
- ㉖ 하천법 제30조의 준공인가 신청
- ㉗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하천점용허가(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 허가·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) 신청

- ⑳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하천점용허가기간(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·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) 연장신청
- ㉑ 하천법 제48조제1항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
- ㉒ 하천법 제85조의 폐천부지등 교환(양여)신청
-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8조의2제1항, 제19조제1항, 제39조의9제1항의 산업단지(개발사업 실시계획, 재생시행계획) 승인신청
- 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, 제22조제3항, 제22조의2제3항, 제23조제3항, 제44조의6제3항의 실시계획(재생시행계획) 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
- 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(제39조의10제1항)의 준공인가 신청
- ㉖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(제39조의10제1항)의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
- ㉗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·제35조 또는 제36조의 국유재산 사용허가(대부·매수) 신청
- 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신청
- 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변경등록 신청
- ㉚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
- ㉛ <삭 제>
- ㉜ <삭 제>
- 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건설기술용역업자 휴업·폐업 신고
- ㉞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양도·양수 신고
- ㉟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법인합병 신고
- ㊱ <삭 제>
- ㊲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(신청)
- ㊳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력확인
- 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(국토교통부훈령) 제5조제4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

## 2. 전자문서 표준화 방식

- ① 각종 인허가 신청서 등 : XML전자문서
- ② 첨부서류(설계도면, 증빙서류 등) : CAD파일, SCAN파일,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
  - CAD파일은 상용 CAD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(KOSDIC)을 적용하여 산출된 파일 형태로 제출

## 3. 전자문서 보존기간 :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

## 4. 전자문서중계자 : 국토교통부

## 5. 사용안내

- ① 신청인은 건설인허가시스템(www.calspia.go.kr)에 접속
- ② 각종 인허가신청서(신고서) 작성
  - 첨부자료(설계도면, 증빙서류 등)는 CAD파일, SCAN파일, 한글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 첨부
- ③ 전자서명
  -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에 전자서명을 등록한 후 전자서명 인증서를 PC에 설치하여야 함
- ④ 작성한 인허가신청서(신고서) 발송
  - 수수료는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해 전자결제(안내화면 참조)
- ⑤ 민원처리 진행상황 조회
  -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신청인의 e-mail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)로 알려주며,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조회 가능
- ⑥ 처리결과 수령
  - 처리결과(허가증, 등록증 등)는 신청인의 요구대로 종이문서(방문 또는 우편) 또는 건설인허가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수령

## 6. 시행시기 :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7. 재검토기한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함